

## 「easy-one 외화송금서비스」 이용약관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17. 8. 18

2.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<b>제2조(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)</b></p> <p>①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 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</p> <p>1. 중여성 송금 :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, 연간 미화5만불 상당액 이하, <u>다만, 건당 미화1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<b>제2조(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)</b></p> <p>①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 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</p> <p>1.중여성 송금 :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, 연간 미화5만불 상당액 이하, <u>다만, 건당 미화3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-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 반영</p>
<p><b>제3조(송금전용계좌)</b></p> <p>⑥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당 100,000원미만, 외화송금전용계좌에는 건당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의 금액 및 외화현찰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<u>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입금액이 50,000원 이상인 경우에는</u> 입금할 수 있습니다</p>	<p><b>제3조(송금전용계좌)</b></p> <p>⑥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당 100,000 원미만, 외화송금전용계좌에는 건당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의 금액 및 외화현찰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<u>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출국만기보험금의 경우 해당 입금액이 50,000원이상인 경우에는</u> 입금할 수 있습니다</p>	<p>-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출국만기 보험금 입금시 입금가능한 최저금액 명시</p>
<p><b>제15조(약관의 변경)</b></p> <p>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<u>제13조를 적용(준용)</u> 합니다</p>	<p><b>제15조(약관의 변경)</b></p> <p>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<u>제6조를 적용(준용)</u> 합니다</p>	<p>-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조항 번호 변경사항 반영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